

대전지방법원 2021. 12. 21 선고 2021나108573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술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백민화

피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은숙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은성, 한상연

변 론 종 결 2021. 10. 26.

판 결 선 고 2021. 12. 21.

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. 4. 8. 선고 2020가단311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4,702,249원과 이에 대하여 2021. 3. 2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, 2021. 3. 1.부터 원고가 별지 도로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피고가 위 토지를 원고에게

인도할 때까지 연 506,08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,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추가판단

가. 원고 항소이유의 요지

이 사건 진입도로는 원고가 수익창출을 위해서 당시 개발분양사업을 계획하던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토지와 함께 제공한 것이지, 공중을 위한 용도로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다.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인 P가 실질적 경영주로 있는 O에 이 사건 진입도로가 포함된 2차부지를 매도하였다가 계약이 해제되어 이 사건 진입도로에 관한 사용수익권이 원고에게 다시 귀속되었고, 피고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이상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진입도로에 대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원고가 이 사건 진입도로를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하기 위한 용도로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진입도로를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, 토지의 제공에 따른 원고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에 더하여 이 사건 진입도로의 위치나 형태, 다른

토지들과의 관계, 주위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아야 한다.

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, 이 사건 진입도로가 1차연립주택 신축 당시에도 인근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1차연립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이 사건 진입도로 부분이 도로로 지정되는 것에 동의하였고, 실제로 1차부지에 1차연립주택 건축 허가조건에 따라 자신 소유의 토지에서 이 사건 진입도로를 분할하여 도로로 지목 변경하였으며, 1차연립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진입도로에 아스콘 포장이 이루어지고 맨홀, 상수도, 전신주 등이 설치된 사실, 그 후에는 이 사건 진입도로가 그 주택 거주자를 비롯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1차연립주택을 신축하고 개발분양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진입도로를 일반 공중을 위한 도로로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.

나아가 이처럼 원고가 1차연립주택 신축 과정에서 이 사건 진입도로를 일반 공중이 무상으로 통행하기 위한 용도로 제공하면서 그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는 이상,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태영, 판사 김윤중, 판사 윤현정

별지

도 로 목 록

1. 천안시 동남구 C 도로 574㎡
2. D 도로 200㎡
3. E 도로 1,240㎡

끝.

